

종중선산관리운영규정

2010년 08월 18일 제정

2011년 02월 20일 개정

2013년 02월 24일 개정

2023년 03월 12일 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선산 및 선영의 유지관리와 선조 및 경주최씨준운공후손의 분묘 설치

및 관리, 시제 봉행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

- ① 본 규정은 경주최씨준운공후손 총회에 등록된 종친에 적용하되, 적용 범위는 종중 이사회의 결의로 가감될 수 있다.
- ② 종중에서 시제 봉행하는 대상 및 범위는 (별표-1)에 의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- ① [관리책임자]란 선산 및 선영의 관리 책임자로서 종중 회장이 된다.
- ② [관리 담당자]란 선산 및 선영을 직접관리 하는 담당자로서 종중의 사무국장이 된다. 단, 종중 사무국장이 관리 담당자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별도 선임된 관리인을 둘 수 있다
- ③ [별초]란 선산 및 선영에서 자란 잔디 깎기를 말한다.
- ④ [사초]란 선영의 묘역 및 분묘에서 자란 잔디 깎기 및 잔디 보식 및 보토 하는 작업을 말한다.
- ⑤ [개 사초]란 선영의 묘역 및 분묘의 기존 잔디를 제거하고 새로운 보토에 의하여 잔디 심기작업을 말한다.

제4조(선산 및 선영 유지관리 사업)

- ① 관리책임자는 년중 선산 및 선영의 유지 보존을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추진한다.
 1. 청주 시조 영단 수호 단역 관리사업 및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중리 선산의 유지 관리사업
 2. 파 시조 영단 수호 단역 관리사업 및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선산 유지 관리사업.
 3. 선조 묘소 제초 및 별초 사업
 4. 선조 묘소 개 사초 및 천묘 사업
 5. 석물공사 및 석물보완공사

6. 기타 선산 및 선영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제반 업무

-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대하여 관리담당자를 통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한다. 단, 관리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업무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제5조(예산수립 및 시행)

- ① 관리책임자는 선산유지관리 및 선영 관리를 위한 예산을 수립하여 시행해야한다.
- ② 예산수립 및 집행은 종중 규약 및 제경비지급규정에 의한다.

제6조(묘지 관리대장) 관리책임자는 묘지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.

제7조 (관리인의 선임) 관리책임자는 선산 및 선영 그리고 종재 (임야 기타 토지) 보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제8조 (관리담당자 및 관리인의 책임)

- ① 관리담당자 및 관리인은 선산 및 선영을 수시관찰하여 선산 및 선영 의 상태를 파악하고 보수 보완하여 원래의 상태로 유지 관리할 책임을 진다.
- ② 관리담당자 및 관리인의 책임은 다음 각호에 준한다.
 - 1. 선산의 및 선영의 수시 관찰 및 상태 파악
 - 2. 의물의 보존 상태 파악
 - 3. 불법 투입물 유무 확인
 - 4. 임야 상태 관찰 (임목 도별 등)
 - 5. 종중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
 - 6. 기타 종재 관리에 관한 업무
- ③ 관리 담당자 및 관리인은 제2항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소 1개월에 1회 이상 정기 관찰을 실시하고 그 상태를 종중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특히 분묘 관찰은 시제 분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내 일반 묘도 하여야 한다.

제9조 (관리인의 보수)

- ① 관리인에게 업무수행을 위한 일정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② 보수의 지급은 종중의 제경비지급규정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- ③ ①항 업무 외에 종중이나 이사회의 위탁에 의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.

제10조 (종원 및 관리담당자, 관리인의 문책)

- ① 선산 및 선영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항의 경우 관리인을 책임 추궁하고 경질 할 수 있다.

1. 선산 및 선영 관리 및 수호에 불 근엄할 때
2. 종의에 부동할 때
- ② 종종의 선산 등 종종 재산 보존에 있어서 다음 각항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의 법 조치 및 종종의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한다.
 1. 종종 임야를 훼손한 자
 2. 분묘를 침해한 자
 3. 불법 투입장을 설치한 자
 4. 임목을 도벌한 자
 5. 의물을 훼손한 자

제11조 (상벌 규정)

- ① 종원 및 관리담당자, 관리인은 제10조 ②항 각호의 상황을 발견하였을 시 제재 지 시 등 선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를 통하여 전 종원에게 통보하며, 그 행위자 가 종원인 경우 종종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 하여야 하며, 행위자가 종원 이 아닌 경우 의법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종원 또는 관리담당자, 관리인이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종종 재산 보존에 현격한 공헌을 한 경우 종종 상벌위원회에 상신 하여 포상할 수 있다.
- ③ 제 ②항의 경우 종종 상벌 규정을 준용한다.
- ④ 종종의 위상을 높이고 종종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자는 종종 상벌위원회에 상 신 포상할 수 있다.

제2장 (장묘)

제12조 (적용법규) 장묘에 관한 적용 법규는 장사 법과 동 시행령 (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)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3조 (장지 이용권한)

- ① 장묘와 천묘를 위한 장지의 이용 권한은 경주최씨준운공후손 및 배우자에 한하며 장지 이용 시 묘주는 관리담당자를 통하여 종종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- ② ①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묘주는 종종의 선산관리운영규정에서 정한 장묘의 설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②항의 규정에 따르지않고 장묘를 설치하는 경우 종종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하며, 종종의 장묘 철거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. 만약 종종의 철거 지시에 따르지 않 을 경우 의법 조치하고, 종종에서 강제 대집행을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장묘의 방법)

- ① 장묘의 방법은 자연장으로 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
 - 1. 매장형 자연장
 - 2. 수목형 자연장
- ② 매장형 자연장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.
 - 1. 화장 후 유골을 곱게 분쇄한 후 고운 흙과 섞은 후 한지로 만든 유골함에 담는다.
 - 2. 종종 선산에 조성된 자연장 묘역 내에 가로 .세로 .깊이 30cm로 잔디를 퍼낸 후 그 속에 유골함을 넣고 흙과 잔디를 덮는다.
 - 3. 자연장 묘역에 설치된 표지석에 사망 일자순으로 고인의 성함 및 생, 졸 년도 및 부모의 성함을 각자하여 표시한다.
- ③ 수목형 자연장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.
 - 1. 화장 후 유골을 곱게 분쇄한 후 고운 흙과 섞은 후 한자로 만든 유골함에 담는다.
 - 2. 종종 선산 중 수목장림으로 식재된 나무 중 선정하여 1m 반경안에 가로 .세로 .깊이 30cm로 퍼낸 뒤 그 속에 유골함을 넣고 흙으로 덮는다.
 - 3. 가로15cm 세로 20cm 크기로 고인의 성함을 명패로 표시 한다.
 - 4. 자연장 묘역이 조성 되기 전 사망하여 종종 선영에 장묘하는 경우, 종종에서 별도 제공하는 임시 묘역에 자연장 방법으로 안치 후 자연장 묘역 조성 후 면례 봉행 하여야 한다. 단, 이경우 유골함은 사기로 만든 유골함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.
 - 4. 종종 선산에 조성된 자연장 묘역 이외의 장소에서의 장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금한다.
 - 5. 타 선영에서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중리 선영으로 이장하는 경우 중리 선영에 기 마련된 매장형 자연장으로 모셔야 한다. 단, 준운공후손종중 후손으로 생존 중 사망하는 경우 수목형 자연장 과 매장형 자연장 중 선택 이용할 수 있다.

제15조 (특례조항)

- ① 제14조의 장묘의 방법은 다음의 경우 적용하지 않으며, 기존 방식대로 장묘할 수 있다. .
- ②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중리 선산에 조성된 분묘 중 특례 조항에 적용받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.
 - 1. 통덕량 휘 영하 조부님의 설단 (비)
 - 2. 가선대부 휘 사개조부님 분묘
 - 3. 정사원종공신 휘 계복조부님 분묘
 - 4. 통정대부 휘 기명조부님 분묘
 - 5. 절충장군 휘 여필조부님 분묘
 - 6. 절충장군 휘 인수조부님 분묘
 - 7. 구곡처사 휘 준운공 분묘

- 8. 휘 성자 4분 조부님 분묘
- 9. 휘 수자 4분 조부님 분묘

③ 다음의 경우 종종 선산내 별도 조성된 위치에 공덕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- 1. 규약 제11조 4항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
- 2. 종종 이사회의 천거로 종종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

제3장 (분묘 관리)

제16조 (분묘 관리 작업의 종류)

- ① 분묘 관리의 대상과 범위는 제2조 ②항 별표-1를 기준으로한다.
- ② 분묘 관리 작업의 종류는 제초, 벌초, 사초 및 개 사초, 천묘 및 파묘 등으로 작업의 시기와 회수는 다음의 각호에 준한다.
 - 1. 제초작업은 양력 5~6월에 실시
 - 2. 벌초작업은 음력 7~8월에 실시
 - 3. 사초 및 개사초는 양력 4~5월에 실시하되 재 시행 시기는 최소 10년 경과후 묘지의 상태에 따라 재 시행
- ③ 사초, 개 사초, 천묘 및 파묘의 선정과 시행은 종종사무국이나 관리담당자가 조사한 자료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로 시행한다

제17조 (제초 및 벌초 작업)

- ① 제초 작업은 인력작업으로 하되 부득이 제초제를 사용할 경우 제초제 사용 규정에 따라야 한다.
- ② 제초제 사용시 살포자는 유경험자로 하며,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시행해야 한다
- ③ 벌초 작업은 잡초 제거와 잔디 깎기를 동시에 시행하며, 잔디 깎기는 2cm~6cm로한다.
- ④ 제초 작업 시 보토를 실시하되 잔디의 생육상태가 불량할 경우 잔디 보식을 한다.

제18조 (사초 및 개사초 작업)

- ① 사초 및 개 사초 작업을 위한 기존 잔디 제거는 잔디가 생육되었던 깊이까지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.
- ② 잔디 제거 시 분묘의 좌향이 바뀌지 않도록 표시 봉을 세운 후 잔디 제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③ 사초 및 개 사초의 경우 잔디 심기는 양질의 토사로 보토한 후 하되 봉분 잔디 심기는 평 때 심기로 하며, 그 외 지역은 줄 때 심기를 한다. 단 특별히 때 심기를 지정한 경우 예외로 한다.

제4장 (시제봉행)

제19조 (시제 봉행일)

- ① 시제 묘의 대상과 범위는 제2조 ②항 (별표-1) 을 기준으로 한다
- ② 시제봉행일은 매년 음력 10월10일이 지난 일요일로한다.

제20조 (시제준비)

- ① 종중의 집행부는 종중의 제경비지급규정에 의거 시제의 제물을 준비 한다.
- ② 종중의 집행부에서 부득이 시제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준비한다.

제21조 (시제봉행)

- ① 관리책임자는 시제 봉행일 전 최소 2주 전에 전체 종원 및 연락 가능한 후손들에게 시제 봉행일 및 봉행 방법 등을 개별 통지하여 많은 종친이 참례하도록 해야한다.
- ② 시제 봉행은 가급적 묘 앞에서 봉행하되 제일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종중 회의실에서 봉행 할 수 있다.
- ③ 시제 봉행 방법은 문중가례방식에 의하되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 한다

제22조 (기타사항) 본 규정에 포함 되지않은 제반 사항은 기존 관례 또는 종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- ① 본 규정 제정 이전의 분묘 관리는 본 규정의 해당 조항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② 본 규정 이전에 설치된 분묘나 가묘는 기존의 설치 권리를 인정하나 이후 천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분묘 설치의 권리는 소멸되며 종중의 선산관리운영 규정에 따른다.